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44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일

제 출 자 : 강 서 구 청 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재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계획에 관한 핵심 내용 및 추진 절차 변경 등의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안 제3조)
- 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안 제4조)
- 라.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5조)
- 마.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6조)
- 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 제10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2. 8. ~ 2023. 2. 28.) 결과: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3)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일부수용

- 제10조(위원회 구성 등)개선의견에 대한 사항은 제19조(그 밖의 사항)에
관련 내용이 있으므로 일부 수용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고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도시가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등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강서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구청장은 구의 경제·사회·환경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⑧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정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정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구의회와 국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경제·사회·환경 등 구정 전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2.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두며,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운영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선정 및 사전 검토
2.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토론회·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그 밖의 사항) ① 그 밖에 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회의록 작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조사·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기본전략,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연구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홍보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이 조례에 따라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안 제9조)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에 따른 연구용역비(안 제20조)
-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안 제2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예상 소요 비용: 약 35,0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매년): 약 12,000천원(20명*100,000원*6회)
 - 지속가능발전 구민 교육: 3,000천원(3,000,000원*1회)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용역: 20,000천원(20,000,000원*1식)

4.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과장 조은영

(담당: 행정7급 김여훈 / ☎ 2600-6193)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 제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계획에 관한 핵심 내용 및 추진 절차 변경 등의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안 제3조)
- 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안 제4조)
- 라.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5조)
- 마.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6조)
- 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 제10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 제제정됨에 지속가능발전계획에 관한 핵심 내용 및 추진 절차 변경 등의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번호	2023-3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기획예산과	조치일		2023. 2. 2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전부개정 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서울강서002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김여훈	전화번호 02-2600-619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현행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 재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계획에 관한 핵심 내용 및 추진 절차 변경 등의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 제10조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 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함.		
	※참고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1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⑤ 생략.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 ⑤ 생략.	종합검토의견 참고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p>	<p>2023년 2월 24일 까지</p>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02월 14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정현주/02-2600-6762)</p> <p>기획예산과장 귀하</p>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도시·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정의·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군·구의 장은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군·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군·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

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 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 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임금·사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도로·항만·상하수도·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 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

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

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08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 3. 25.] 제3조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